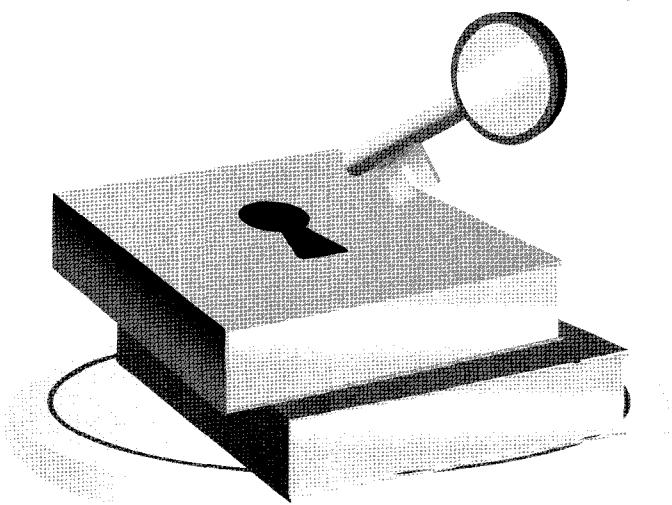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LPG충전소 배치계획 수립기준 변경 -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436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유소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유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안 제7조)

1) 주유소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거리산정 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주유소 등이 접단취락 등으로 개발제



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외곽에 설치되어 불편을 초래함.

- 2) 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취락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주유소 등의 설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3) 지역여건과 이미 설치된 시설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배치기준에 따라 주유소 등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5호파목 다”를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 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 표 1 제5호파목다)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주유소 간의 간격(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p>	<p>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 표 1 제5호마목10)</p> <p>1. (현행과 같음)</p> <p>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p>
<p>〈신 설〉</p>	<p>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가.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p> <p>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